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02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
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인

2016년 3월 9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제10조의4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영주차장”을 “노상주차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